

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(1유형)

## 「미래차 부품·소재 혁신인재 양성사업」

###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미래차 부품·소재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, 2023년도 「미래차 부품·소재 혁신인재 양성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구 지역 소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1월 20일

대구광역시장

#### 1. 사업목적

-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미래차 분야 접근성 및 역량 강화
- 지역 제조기업 및 5대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

#### 2. 모집 및 지원내용

- 사업명 : 2023년 미래차 부품·소재 혁신인재 양성사업
  - 인건비 지원 기간 : '23년 3월 ~ '23년 12월 (최대 '24년 12월까지)
  - 모집대상 :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인 3인 이상의 중소·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·생산 및 정비, 배터리 생산 및 충전시설 설치·유지보수 등 그 외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
  - 지원규모 : 25명(신규)
  - 지원내용
    - 청년 : 인성교육(16h), 미래차 부품·소재 혁신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(40h), 필수교육 수료 시 실비지급, 교육생간담회를 통한 네트워킹 형성 등
    - 기업 : 1인당 월 160만원(기업부담 별도) 인건비 지원
- ※ 사업장 당 최대 3명 한도 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수의 50% 지원

## ● 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절차

① 참여기업 모집·선발	② 참여청년 모집·선발	③ 기업-청년 매칭	④ 채용사실 통보	⑤ 협약체결/필수교육 이수
23.1.20.(금)~ 23.2.3.(금)	23.2.8.(수)~ 23.2.24.(금)	~23.3.3.(금)	~23.3.8.(수)	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
-참여기업 모집공고 게시 -참여기업 선발 (적부여부 확인)	-참여청년 모집공고 게시 -참여청년 선발	-매칭데이 운영 -현장면접 후 최종 고용/근무여부 확정	-정원내 선착순 접수 -매칭결과통보 (기업→벤처협회)	- 협약체결 - 인성교육(16h) - 이론·실무교육(40h)

## ● 참여기업 선정방법

- 신청서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
(다만, 필요시 자체 심사를 통한 선정 가능)

※ 관련 구비서류는 공고 기간 내에 운영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### (필독) 참여기업-청년 매칭 안내 및 유의사항

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정보는 청년 모집공고에 공개되며 해당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함
- 공개된 참여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이 기업을 선호도 순서로 선택 후 (1~3순위) 매칭데이 행사를 통해 현장면접 실시(매칭데이 3월예정)
- 청년이 선택한 기업에서 해당 청년 고용을 희망할 경우 참여기업으로 최종선정됨
- 해당 기업을 선택한 청년이 없거나 기업에서 해당 청년 고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매칭을 포기할 수 있음(지원 불가)

## 3. 자격요건

### ● 신청기업 자격요건

- 신고일 기준 대구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사업주, 일용직, 지원 대상자 제외) 3인 이상 사업장으로, 미래차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요구

## 하는 중소기업

※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

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

### ■ 업무 내용

- 미래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제조, 생산, 품질관리, 자재관리 등 현장업무 및 사무업무
-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업경영, 인사, 총무, 회계, 경영지원, 마케팅
- 구매관리, 영업관리, 영업지원 등 원청 및 하청 부품조달 및 공급 업무
- 설치, 유지보수, 기능정비 등 현장관리 및 현장업무
- 제품설계, 프로그램 연구개발, 디자인 등 개발 업무
- 미래자동차 전반에 필요한 연구직
- 스마트자동차부품설계 및 제품/장비 금형 등 생산기술 업무
- 수소자동차, 전기자동차부품 및 제조·생산 전반에 따른 업무
-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진단과 기능정비 등 현장기술인력
- 전기차 스마트제조현장의 기반이 되는 자동화 전반의 설계실무자

■ 참여기업 제외대상 : [별첨 1 참조](#)

### ● 지원인력 자격요건(청년모집 별도 공고 예정)

■ 연 령 : 만 39세 이하

※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함 (1983.01.02. 이후 출생자)

■ 거주지 : 대구 지역 거주(주민등록 기준)

\* 대구시 외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

■ 급여수준 : 월 급여 202만원 이상,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

\* 월급 : 기본급, 식비, 교통비 등 모든 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금액

\* 4대 보험 기업부담분, 성과급, 퇴직금, 연장근로(야간·휴일) 수당 불포함

## [2023년 최저임금]

### ■ 2023년 월 환산액 2,010,580원

\* 시간당 9,620원,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기준

\* 월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※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에 따름

■ 채용시기 : '23. 3. 3. (매칭데이) 이후 채용된 자(고용보험 가입일 기준)

■ 학 력 : 대구 소재 직업계고(마이스터고, 특성화고), 전문대, 대학 졸업(예정)자

● 지원인력 제외 대상 : [별첨 2 참조](#)

## 4. 신청방법

● 공고기간 : 2023. 1. 20.(금) ~ 2. 3.(금)

● 신청기간 : 2023. 1. 20.(금) ~ 2. 3.(금) 18:00까지

● 신청방법 : 신청서(서식 2) E-mail 접수

※ 신청서는 반드시 이메일로만 접수 (방문, 우편, 팩스 불가)

※ 공고 기간 내 관련 구비서류 보완 (방문 및 우편)

● 접수처

운영기관	주소 및 연락처
대구 FKTU 인적자원전문학교	- 달서구 조암로 13, DTL빌딩 5층 - ☎ 475-9003 - E-mail : inochong7638@nate.com

●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

■ [서식 2] 미래차 부품·소재 혁신인재 양성 사업 신청서 1부

■ [서식 2-1] 참여 기업 확인서 1부

■ [서식 2-2] 사업수행계획서 1부

■ [서식 2-3] 참여 기업 현황카드 1부

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비영리법인, 단체 해당 확인서 1부
-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
-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-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
-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
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홈택스 발급) 각 1부
- 기술혁신형기업 인증서류 사본 1부(신청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, 해당 기업 限)

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## 5. 유의사항

- 참여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및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 해지 및 참여 제한 등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문인력은 취업 초기 운영기관이 지정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- 협약 해지 또는 지원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'24. 12. 31.까지 지원  
※ 협약해지, 채용장려금 지급 중단 및 보류 사유 : **별첨 3 참조**
-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부터 지원 종료 후 2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-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(신청서 제출 시 관련 입증서류 반드시 제출)
- 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, 지원금 환수,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## 6. 문의처

□ 대구FKTU인적자원전문학교

(E-mail : [inochong7638@nate.com](mailto:inochong7638@nate.com) ☎ 053-475-9003)

## 별첨 1 참여기업 제외 대상

(1) 소비·향락업\*,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\* 업종

※ 소비·향락업

-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
-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해당기업
-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
※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

-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(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)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
-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
(2)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)

(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 ([알리오시스템\(www.alio.go.kr\)](http://www.alio.go.kr)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)

(4)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
(5)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

(6)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
(인위적 감원 :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“23” ①~⑥ 또는 “26” ③)

(7)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(8) 노사분규 중인 기업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

(9)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중인 기업

(10) 예비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중 채용계획 이행률 50% 미만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

※ 채용계획 이행률 = (채용인원 수×채용자 근속기간) / (채용 계획인원 수×12개월)

※ 채용계획 이행률 계산시 대체 채용자 근속기간 포함

(11) 과거 인위적 감원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

(12)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## 별첨 2

## 참여인력 제외 대상

- (1)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
- (2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(3)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 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
- (4)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
- (5)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
- (6) 채용 예정 기업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
- (7)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」에 따른 중복 또는 반복 참여자
- (8)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타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
- (9) 최근 3년간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자
  - ※ 사업 참여일 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
- (10)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(11)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시행지침 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(12)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
- (13)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(다만, 아래의 경우는 지원 가능)
  -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 중인 졸업 예정자  
(수료자 포함)
  - 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

### 별첨 3

## 협약 해지, 지원금 지급 중단 및 보류 사유

#### ○ 협약 해지 사유

- (1) 서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한 내 불이행
- (2) 지원 기간 중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
- (3) 지원 기간 중 참여기업 선정 당시 참여기업 및 근로자 참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 
예) 사업장 주소 이전, 업종 전환, 근로자 타 시도 진출, 근로자 퇴사 등
- (4)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
- (5) 지원 인력이 타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
- (6) 기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#### ○ 지원금 지급중단 사유

- (1)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(2)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
- (3) 중도퇴사 등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종료일로 부터 3개월 경과 시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
- (4)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

#### ○ 지원금 지급보류 사유

- (1) 고용보험료 미납부액 발생 시 완납 시까지
- (2) 일시적 사유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